2025년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> 2025년 2월 6일 궁능유적본부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
| 연번 | 채용분야 | 직종 | 인원 | 담당업무 | 근무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안전관리원 (야간) *감시단속근로자 | 공무직 | | o 야간 경비, 방호 및 안전관리 o 관람객 안내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o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|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(경기도 여주시) |

2. 응시자격

- □ 공통자격 [판단기준일: 최종시험 예정일]
 -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 ~ 만 60세 미만
 - 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 -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공정 채용기준 채용 결격사유

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 - 1. 피성년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

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(아동・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□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[**판단기준일: 원서접수 마감일**]

| 채용분야 |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| <응시자격> | 제한 없음 | | | | |
| 안전관리원 | <우대사항> | | | | | |
| 주간 | 근무경력 | 경비, 방호, 소방, 방범 관련 분야 | | | | |
| | 자 격 증 | 경비지도사, 응급구조사, 소방안전관리자 | | | | |

- *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
- * 반드시 응시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)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, 경력증명서에는 <u>근무기간,</u> 직급(직위),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(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- * 해당기관 관인·날인 필수
- * 자격증은 등급 및 개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며,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

3. 근무기간

| 채용분야 | 근무기간 | 채용예정일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안전관리원 |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실무수습 | 2025.3.1.(1명) | *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|
| (야간) | 기가 중 편기를 가진 고디자 편칭 정비 거져 | 2025.4.1.(1명) |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|

* 「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」에 따름

4. 근무시간 및 보수

□ 근무시간 및 보수

| #II O H AI | 근무시간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채용분야 | _ ; ; _ (형태) | 기본급 정액급식비 | | 야간근로 가산수당 | 합계 | 비고 |
| 안전관리원 (야간) | 18:00 ~ 익일 09:00 (2교대 격일근무) | 1,617,690원 | 140,000원 | 399,480원 | 2,157,180원 | |

^{*}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무일 변경 가능

□ 후생복지

-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- 명절휴가비(연2회 설·추석 각 550,000원 지급)

5. 시험방법: 서류전형+면접전형

- □ 서류전형(1차 시험)
 - **(소극적 서류전형)**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, 적격자는 전원 합격 처리
 - **(적극적 서류전형)** 응시인원이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
 -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

□ 면접전형(2차 시험)

-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5개 평가요소별로 상(우수), 중(보통), 하(미흡)로 평정

|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| ② 당해업무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| |

- 불합격 기준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 -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, 같을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
 - * 불합격 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 하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

^{*} 보수는 「2025년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」에 의함

- 최종 합격예정자의 채용 포기,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6.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

| 채용분야 | 최종합격자 | 예비합격자(운영기한)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안전관리원(야간) | 2명 | 2명 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) |

-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·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
 - ※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· 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,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(단,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7. 시험일정

| 구 분 | 일 정 | 비고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■ 공고기간 | 2025. 2. 6.(목) ~ 2. 13.(목)) |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| | |
| ■ 응시원서 접수 | 2025. 2. 7.(금) ~ 2. 13.(목) | (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 에 한함) | | |
| 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| 2025. 2. 18.(화), 15시 이후 | 국가유산청, 궁능유적본부(세종대왕유적관리소) 누리집 공고 | | |
| ■ 면접전형 예정일 | 2025. 2. 20.(목) |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| | |
| ■ 최종 합격자 발표 | 2025. 2. 25.(화) | 국가유산청, 궁능유적본부(세종대왕유적관리소) 누리집 공고 | | |

^{*}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8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 2. 7.(금) ~ 2. 13.(목)
- 접수방법: 접수기간 내 **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**으로 접수

-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"공개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" 표기
 - ※ 우편접수는 <u>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</u>에 한해 접수하며, "응시표"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.
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접수처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채용담당
 -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-10 / (우)12642
 - ※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9. 제출서류

-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(필수)
- 응시원서 1부-서식1(필수)
- 입사지원서 1부-서식2(필수)
- 자기소개서 1부-서식3(필수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-서식4(필수)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_서식4(필수)
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-서식6(반환 필요 시)
- 우대사항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10. 재공고 사항

○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
11. 기타 사항

-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
-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

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. 단,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

-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
-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.(기재착오 또는 누락 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)
 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채용 담당자(☎ 031-880-4703)

붙임 응시자 제출서류(서식 포함) 1부. 끝.

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

| 성 명 | 응시 분야 |
|-----|-----------|
| | 안전관리원(야간) |

■ 작성목록(총괄표)

※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(클립) 1개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플러 미사용)

| 목록 | 작성 | 여부 |
|---|----|----|
| 1.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(<mark>필수</mark>) | | |
| 2. 응시원서(필수) * 서식 1호 | | |
| 3. 입사지원서(필수) * 서식 2호 | | |
| 4. 자기소개서(필수) * 서식 3호 | | |
| 5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<mark>필수</mark>) * 서식 4호 | | |
| 6.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 등 체크리스트(<mark>필수)</mark> * 서식 5호 | | |
| 7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완료 후 반환 필요 시) * 서식 6호 | | |
| 8. 우대사항 경력증명서, 자격증 및 가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| | |

^{*} 내용을 작성·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"○" 표시

응 시 원 서

본인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.

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5년 2월 일 성명: (서명)

궁능유적본부장 귀하

| ※ 접 번 | 수 ! 호 | | 응시분야 | [공무직] 안전관리원 야간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성 | тН | 한글 | 생년월일 | | |
| /8 | 명 | 한자 | 근무지 | 세종대왕유적관리소 | 사진부차 불요함 |
| 주 | 소 | | | | |
| 전 | 화 | | | | |
| (휴대 | 전화) | | | | |

※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

| | | 응 / < 공무직 등 근5 | _ |]험 >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사 대 | 한글 | | 생년월일 | | 사진부착 불요함 |
| 성 명 | 한자 | | 근무지 | 세종대왕유적관리소 | 710171228 |
| ※ 응 시번 호 | | | 응시분야 | [공무직] 안전관리원 야간 | |
| | | | 25년 2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| 월 일 유적본부장 (인) | |

응시원서 작성요령

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(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)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
1. 응시분야 :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

2. 성 명: 한자(漢字)는 정자로 기재

3. 생년월일 :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

4. 주 소 :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

5. 연 락 처 :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

「※」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입사지원서

| 1. 공통사항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지원분야 | [공무직] 안전관리원 (| 갸 간 | | | 00 | 시번호 | |
| 성명 | (한글) | | | | | | |
| 연락처 | (본인휴대폰) | 전자 | | | | | |
| 2371 | (비상연락처) | 우편 | | | | | |
| 생일 | | | | | | | <생년은 미기재> |
| 주소 | (우편번호) | | | | | | |
| 2. 우대사항 | | | | | | | |
| | 근무기관 | 근무기간 | | 직 | 위 | 담당업무 | |
| 근무경력 | | | | | | | |
| _, _,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자격증명 | | 자격증 취 | 취득(예정 |)일 | | 자격 검정기관 |
| 자격증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※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)※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| | | | | | | |
|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| | | | | | | |
| | | 2025 | 년 2월 | 잍 | <u>ļ</u> | | |
| | | | | 성 | 명 : | | (인) |

자 기 소 개 서

| ◎ 자기소개서(지원직종 직무기술·직무능력 포함 작성) |
|---|
| (유의사항)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, 출생지, 가족관계 (학력, 지위, 재산) 등의 사항과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에서 수집·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
ㅇ작성요령

-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,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
 - · 글씨크기 12, 줄간격 150mm,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, 상하 여백은 각각 15mm, 머리말,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□ [필수]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항목 | 수집-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|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 | 근로관계 종료 |
|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| 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| 후 3년 |
|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 |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 | 구 3년 |

| 위와 같 | 이 개인? | 정보를 | 수집• | 이용하는데 | 동의하 | 십니 | <i>까</i> ?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|

| □ 동의함 | □ 동의하지 | 않음 |
|-------|--------|----|
|-------|--------|----|

□ [필수]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내역

|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| 수집·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 |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 |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|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| | □ 동의함 | □ 동의하지 | 않음 |
|--|-------|--------|----|
|--|-------|--------|----|

□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항목 | 수집.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|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 |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|
| 전자우편주소 | 관리 | 10년 |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| □ 동의함 | □ 동의하지 | 않음 |
|-------|--------|----|
| | | はロ |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5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귀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<u>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</u>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<u>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</u>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〈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〉

| 1. <u>공직자</u>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및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 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| 해당 □ 비해당 □ |
|--|---------------|
| 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<u>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 | 해당 □ 비해당 □ |
| 3-1. 해당 부패행위 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 | 해당 □ 비해당 □ |
| 3-2. 위 퇴직일 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 | 해당 □ 비해당 □ |
| 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| 해당 □ 비해당 □ |
| 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(5년 내) | 해당 🗌 |
| | 비해당 🗌 |
| 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| 해당 🗌 |
| 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 | 해당 □ 비해당 □ |
| 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| 해당 🗌 |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5년 월 일

| 생년월일 | | | | 지원자 | (서명) |
|------|---|---|---|---------|-------|
| 생선적임 | | | | 시원사 | (서 년 |
| 0622 | • | • | • | 1 12' 1 | \ 1 0 |

[붙임서식-6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| 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구인 | 성명 | 수험번호 |
| 주 소 | | |
| 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 | | |
| 반환청구서류 | | 원하는 응시자만 작성 재시 반환처리 불가 |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